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87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·박 정·김홍걸

최혜영 • 유정주 • 이수진

장철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고용진 · 서영교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활 성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·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제기됨.

이에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10호).

법률 제 호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	제7조(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
시행계획) ① (생 략)	시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0.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
	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
	<u>관한 사항</u>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과 같음)